

중양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기준(제4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사무실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집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실

별도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교육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회의실·세미나실 등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나. 인력기준

구분	인원	자격기준
1) 중양수어 통역센터장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수 어통역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종사자	4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수어통역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청각장애인통역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중양수어통역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중양수어통역센터장은 중양수어통역센터의 운영계획·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
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일반 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가)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나) 직원관계서류(인사카드 및 출퇴근기록부 등)
- 다) 회의록
- 라) 사업일지에 관한 서류(통역 및 업무일지 등)
- 마) 문서 접수·발송 대장 및 해당 문서
- 바) 차량운행일지

2)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나) 금전·물품의 출납부 및 그 증명 서류
- 다) 예산서 및 결산서
- 라)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
- 마) 비품관리대장
- 바) 후원금관리대장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